

한국언론학보 규정
(개정일 2026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에 의해 발간되는 학술지는 <한국언론학보>(이하 '학보')라 칭하며,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으로 한다. 학보의 발간은 한국언론학회 산하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기존의 「논문발간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규정」 및 「투고자격과 투고논문기준」을 통합하여 학보의 운영·출판 및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보 운영의 투명성과 논문 심사의 엄정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발간)

1. 학보는 연간 6회 발행하며, 각 호의 정규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월 말일, 2호: 4월 말일, 3호: 6월 말일, 4호: 8월 말일, 5호: 10월 말일, 6호: 12월 말일
2. 편집위원회는 규정된 발행주기를 준수하며, 학보에 게재 확정된 논문은 정규 발행일에 맞추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은 늦어도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누락 없이 완료하여 발행의 정시성을 확보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위원회가 추천하고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 부편집위원장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4. 학보 운영의 객관성과 대외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편집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회 임원진 또는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부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 내 주요 업무의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로 구성된 편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특별호 간행을 위한 특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장은 학보의 편집, 심사 및 발간 업무를 총괄하여 정규 발행일자에 맞추어 발간하

며,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논문의 게재 여부 확정을 포함하여 학보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다.

2. 부편집위원장은 소관 분야의 투고 논문을 관리하고, 본심사 회부 전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등 실무적 총괄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이사는 학보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서 원문 등 제반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전공 분야별 적합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전문 심사위원 위촉 및 추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장 논문 투고 및 출판 기준

제6조(투고 자격)

1. 본 학보에는 학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비회원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투고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투고 논문 분량 및 양식)

1. 투고 논문의 분량은 초심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국문초록·본문·표·그림(세로 1cm당 70자로 계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단, 영문초록, 참고문헌 및 부록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분량을 초과한 논문의 심사 진행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2. 이외 투고 논문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학보>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제8조(논문 투고의 다양성)

1. 학보의 학술적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심사 대상 기간(또는 발행 연도) 동안 접수된 전체 투고 논문 중, 주저자(책임저자, 제9조 제2항)의 소속기관이 동일한 논문투고건의 비율은 2/5(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논문투고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사 절차가 최종 종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투고 후 철회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사 부적합으로 처리되어 본심사에 회부되지 아니한 논문

② 본심사에 회부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

③ 본심사에 회부되어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

3. 편집위원회는 특정 기관 논문투고건이 제1항의 비율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 접수, 심사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저자 표기 기준 및 주저자의 정의)

1. 저자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고, 이후 공동저자를 기여 순으로 명기한다. 교신저자(책임저자)는 저자 명단에서의 위치와 관계없이 별표(*) 등의 표시를 통해 명기한다.

2. 학보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인증평가 지표 중 논문 투고 다양성 항목을 산정하는 주저자

(책임저자) 기준은 논문의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단독저자(1인 저자)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단독저자를 주저자로 간주한다.

3.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심사 연락 및 출간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와 소통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대표성을 가진다.

4. 논문의 저자가 특수관계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포함)을 공동 저자로 포함하여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특수관계인 저자 참여 확인서' 및 '연구 기여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로 확인되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즉시 중단하며, 사후 조치를 위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1. 투고된 논문은 본심사 진행에 앞서 소관 분야 부편집위원장이 학보 주제와의 부합성, 학술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한다. 사전 검토 결과가 심사 회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부적합(Desk Rejection) 처리를 건의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투고자에게 본심사 미회부 사실을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 부적합 논문은 편집위원장과 담당 부편집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에서 최종 처리한다. 편집위원장과 담당 부편집위원장은 구체적인 심사 부적합 사유를 각각의 심사 의견서에 기록하며, 해당 논문은 학술지 인증기준에 따른 논문탈락률 산정에 포함한다.

3. 본심사는 저자와 심사위원이 서로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전 검토를 통과하여 본심사에 회부된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개별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4. 2인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판정이 대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 부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술지 기준 등을 정성적으로 종합 심사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5. 논문 투고자가 제4항에 따른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하여 공식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초심 및 재심 판정에 관여하지 않은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가 심의를 거쳐, 저자의 이의신청 사유와 기존 심사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정(기존 판정 유지 또는 특별 재심 회부 등)을 내린다.

제11조(논문 판정 기준 및 조치)

1. 투고 논문은 논문심사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4단계로 판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① 당호 게재: 본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별도의 수정 없이 해당 호에 게재한다.

② 수정 후 당호 재심: 해당 호에 게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수정 확인을 거쳐 당호에 게재한다. 단,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으로 처리된다.

③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재심사 과정을 거쳐 '당호 게재' 또는 '수정 후 당호 재심'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한다. 초심에서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판정 이하를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도 동일한 판정이나 그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 부적합'으로 최

종 처리한다.

④ 게재 부적합: 본 판정을 받은 원고는 학보에 재투고할 수 없다.

제12조(관련 일자의 표기)

1. 논문 심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보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는 최초 투고일, 게재 확정일, 최종 논문 수정일을 표기하며 각 일자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최초 투고일: 투고자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고 제출을 완료한 후,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쳐 본심사 회부가 확정되어 시스템에 공식 접수된 날짜로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게재 확정일: 심사 및 판정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게재 승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짜로 한다.

③ 최종 논문 수정일: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투고자가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 원고를 제출한 날짜로 한다.

제13조(출판 비용의 투명성과 고지)

1. 학보는 다음 각 항의 투고료, 게재료 및 분량 초과 비용 등 논문 처리 비용을 투고 안내, 학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자가 투고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2. 학보의 투고료는 저자의 회원 자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한다.

① 회원(정회원·준회원 포함): 30,000원

② 비회원(모든 저자가 비회원인 경우): 80,000원

3. 학보의 기본 게재료는 저자의 소속 및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한다. 저자 중 1인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① 연구비 지원 논문: 200,000원

② 정규직(지원 없음): 100,000원

③ 비정규직(지원 없음): 50,000원

4. 출판 논문의 분량이 원고지(200자) 환산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1매당 2,000원의 초과게재료를 부과한다.

제14조(저작권)

1.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별지 서식의 저작권 이용·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학회에 귀속된다.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① 출판권

② 디지털제작권

③ 전송권

④ 배포권

2. 학보는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JCI)에 저작권 정책을 등록하며, 게재 논문의 원문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무상으로 공개한다.

제4장 논문 심사 및 발간 관리

제15조(심사위원 위촉 및 공정성 의무)

1.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보 운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투고자의 소속기관(동일 기관 배제) 등 이해충돌 요소를 엄격히 고려하여 선정 및 배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 본인의 학문적 관점이나 해석이 심사자 개인의 견해와 상충된다는 사적인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학술적 기준에 의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을 규정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심사 결과의 통보 및 수정 의무)

1. 편집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최종 확정된 심사 판정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공식 통보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수정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투고자가 심사 및 판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술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이의신청서 또는 수정거부 사유서)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초심에서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원고 제출 기한은 심사 판정을 받은 호를 기준으로 이후 2호(4개월) 이내의 차기 논문 제출 마감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수정 원고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자동 '게재 부적합' 처리한다.

제17조(원고 교열 및 발간 관리)

1.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학보 편집 과정에서 원고 교열 마감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논문작성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의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게재 연기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편집이사는 그 사유와 조치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 또는 서면 기록으로 남겨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9일 학술지위원회에서 승인하고 2026년 10월 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기존 「편집위원회규정」의 개정 경과)

학술지위원회(2025. 12. 3.) 개정

③ (기존 「논문심사규정」의 개정 경과)

제18대 학보편집회의(1991. 12. 23.) 제정

제19대 학보편집회의(1992. 10. 16.) 개정

제23대 학보편집회의(1996. 8. 24.) 개정

제28대 학보편집회의(2001. 11. 17.) 개정
제28대 학보편집회의(2002. 3. 2.) 개정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3. 15.) 개정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5. 16.) 개정
제29대 학보편집회의(2003. 7. 15.) 개정
제30대 학보편집회의(2003. 10. 25.) 개정
제32대 학보편집회의(2005. 11. 19.) 개정
제33대 학보편집회의(2007. 5. 11.) 개정
제36대 학보편집회의(2010. 1. 19.) 개정
제43대 학보편집회의(2017. 9. 15.) 개정
제44대 학보편집회의(2018. 7. 13.) 개정
제52대 학보편집회의(2025. 12. 3.) 개정